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보윤의원·서미화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244

발의연월일: 2024. 12. 5.

발 의 자:최보윤·서미화·김선교

정성국・서천호・윤종오

진종오 • 이수진 • 남인순

윤영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,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,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의 실시와 고용정보 제공 등 직업지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훈련 및 재활, 근로 및 고용에서 장애인에게 최대한 독립성과 통합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은 농어촌지역을 포함한 장애인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근접한 곳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, 장애인 직업지도는 장애인 개인에 맞는 개별화고용계획 작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

것임(안 제3조제2항 전단, 제10조, 제43조 및 제75조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전단 중 "장애인의 특성을"을 "장애인의 특성 및 지역사회 와의 연계를"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"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"를 "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장애인 개인별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(이하 "개별화고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며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제3항"을 "개별화고용계획의 내용 및 절차, 제3항"으로 한다.

제43조제2항제2호 중 "직업지도"를 "직업지도 및 개별화고용계획 수립"으로 한다.

제7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재활실시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원의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	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
임) ① (생 략)	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	②
업주·장애인, 그 밖의 관계자	
에 대한 지원과 <u>장애인의 특성</u>	<u>장애인의 특성</u>
<u>을</u>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	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
구하여야 하고, 장애인의 고용	
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	
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	
추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중증	
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	
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	
시하여야 한다.	
	.
제10조(직업지도) ① 고용노동부	제10조(직업지도) ①
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	
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	
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	
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, 직업	
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	
등을 실시하고, <u>고용정보를 제</u>	<u>그</u> 결과를 기초로
공하는 등 직업지도를 하여야	하여 장애인 개인별 고용촉진

한다.

- ② ~ ④ (생 략)
-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비용 지급 및 융자ㆍ지원의 기준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.
- 립) ① (생략)
 -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수행하다.
 - 1. (생략)
 - 2.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, 직 업적성 검사, 직업능력 평가 등 <u>직업</u>지도
 - 3. ~ 12. (생 략)
 - ③ (생략)
- 제75조(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) ① ~ ③ (생 략) <신 설>

및	ス	업재	활	계획	획(ㅇ	하	"개	별
화를	고	용계획	"○]	라	한다	구)을	수	립
하디	ᅧ	고용	정토	<u></u> 를	제	공하	느	등
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.								

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 ⑤ 개별화고용계획의 내용 및 절<u>차, 제3항</u>-----

제43조(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 제43조(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 립) ① (현행과 같음)

- 1. (현행과 같음)

----직업지도 및 개별화고용 계획 수립

- 3. ~ 12. (현행과 같음)
- ③ (현행과 같음)
- 제75조(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 -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제2 항에 따른 재활실시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원의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지원을

	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<u>④</u> (생 략)	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